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⑪ - 풀피리

관심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즐기던 악기

경기도 무형문화재 오세철 풀피리 전수



최 중 규
포천문화회 회장

-지정번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지정년월일: 2000년8월21일
-거주지: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959-20
-보유자: 오세철(47세)
-종사기간: 1971년~현재
풀피리는 초적(草箏) 또는 초금(草琴)이라고 부르는 악기이다. 옛날에는 풀나무 잎사귀 갈대잎 빛나

무 겹집 등 풀이나 잎사귀 나무껍질을 입에 물고 불었던 향토에서 토속적으로 불리워진 악기이다.

고려악에는 도피(桃皮) 피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악학계법에 의하면 나무껍질이나 나뭇잎을 말아서 입에 물고 불기도 하며 나뭇잎을 접어서 입술에 대고 불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악기의 제작방법이나 체제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는 강도를 조절하여 음의 고저를 얻는 악기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연산군 시절에 초적 또는 초금에 대한 기록이 산견되며 중종으로 이어졌으니 그 역사가 오래되어 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풀피리는 제작방법이나 용도가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악기와 함께 합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악기로 사용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풀피리는 경향 각지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풀피리 보유자 오세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스스로 즐기던 악기이고 한때는 궁중 음악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전문적인 악공이나 기녀를 궁중에 두

기도 하였다.

무형문화재 오세철

오세철은 1971년부터 풀피리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어언 30년이 지났다. 그의 스승으로는 연천에 살던 전금산이라는 분인데 당시 80여 세였으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악에도 조예가 깊으며 버들피리와 풀피리도 잘 부는 음악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분이였다고 한다.

처음에 배울 때에는 아카시아 잎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소리내는 연산만도 약 3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역시 끈질긴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세철은 풀피리를 이용하여 고운 음색을 낼 수 있으며 악곡의 음정도 정확하게 표현되며 현재의 기량으로 보아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어떤 곡이든지 풀피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재적 기능의 보유자이다.

특별기고

‘溫故知新’ 추석명절의 차례예법

그 무렵엔 날씨가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니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은 우리의 대표적인 명절의 하나로 중추절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추석명절 때는 국민의 절반이상 이 대이동을 하게 되며 흩어져 생활하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즐겁기만 하고, 조상님들의 음력을 기리기 위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 민족의 큰 잔치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기혈을 받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심신을 다 바쳐서 지극 정성 효성을 다 하여야 한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천륜이며 까마귀도 늙으신 자식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옛말이 있는데 사사여생(事死如生)이라 하여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같이 정성을 다하여 추모 하여야 하며 이렇게 숭조하는 것이 큰 효도 하는 길이다.

사례(四禮)편람에 근거하여 설, 추석의 차례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니 이번 추석 명절에 참고하여 숭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생전에 모시듯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차례를 차리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다.(지방과 가풍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음)

■ 차례상 차리는 법과 차례 순서

▷제상 진설의 원칙

- 좌포우폐-좌측에 포, 우측에 폐
- 어동육서-동쪽에 어류, 서쪽에 육류
- 두동미서-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 조율이사-대추,밤,감,배의 순서로 과일을 올린다.
- 흉등백서-붉은 색은 동쪽에 흰 색은 서쪽에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의 경우에만 좌측에 올리고 양위합제의 경우 중간부분에 올린다.
- 면(국수)은 건더기만을 좌측 끝에 올리고 편(떡종류)은 우측 끝에 올리며 청(초청, 꿀, 사탕)은 편 좌측에 올린다.
- 항상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으며 그 앞에 모사그릇, 피우그릇 등을 놓는다.
- 동쪽에 상을 놓고 강신잔과 술병을 놓는다.

■ 제사음식의 조리법

- 과일(복숭아)를 생선은 쪄지, 삼치, 갈치 끝 자가 치자로 된 것을

쓰지 않는다.

- 고추가루와 마늘양념을 하지 않는다.
- 식혜, 탕, 면을 건더기로 쓴다.
- 뽕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조리한다.

■ 차례순서

(차례는 단헌무축으로 제제가 간소하며 고조까지 4대를 제사한다)

1. 강신례를 행한다.

- 제주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세 번 향을 피운다.
- 구부렸다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조금 뒤로 물러선다.
- 제주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 제주는 잔을 받는다.
- 원편 집사가 탁자 위의 잔대를 내가 지고 제주 좌편에 무릎을 꿇고 잔에 술을 붓는다.
- 제주가 받은 술을 모사 위에 세 번 붓는다.
- 원편 집사가 빈 잔을 받아 상 위에 놓는다.
- 제주가 꾸부렸다 일어나 두 번 절한다.

2. 참신례를 행한다.

- 제주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3. 잔을 올리는 예를 행한다.



이 병 업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신위 앞에 선다.
- 좌우 집사가 제자리에 선다.
- 제주가 아버님 신위 앞 잔을 들고 동쪽을 향해 선다.
- 집사가 서쪽을 향해 잔에 술을 붓는다.
- 다음에는 어머니 신위 앞 잔을 받들어 동향해서 선다.
- 집사가 서향하여 잔에 술을 붓는다.
- 제주가 잔을 받들어 원위치에 놓는다.
- 제주가 구부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선다.
- 좌우 집사는 손가락을 떡국 위에 짓가락을 찍어 올린다.
- 제주가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4. 사신례를 행한다.

- 집사자가 손가락과 짓가락을 내려 시집그릇에 점쳐 하여 놓는다.
- 제주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 제주가 지방을 사르고 제수를 물린다.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⑭

프랑스와 일본의 경찰제도

소권·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에게 기초조사·현행범에 대한 범죄피의자 및 참고인 보호유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구조가 경찰·검찰·예심판사의 3단계 과정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명령·감독하고, 예심판사는 검사에게 강제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유지가 주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또한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위한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및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사법제도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경찰은 법원에 부속되어 있고, 중죄사건·미성년자사건과 경죄사건 중 복잡한 사건의 수사는 예심이라는 독특한 절차를 통해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등의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판사가 수사에 착수하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는 검찰의 소추 및 사소당사자참가신청에 의해 서판 개시된다. 예심판사는 사법경찰에게 지시나 위임을 함으로써 수사행위를 할 수 있고, 현장수사업무에 대한 지시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예심판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한 인도주의사상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양면적 이유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수사의 일부인 중대형 수사에만 개입함으로써 실질상의 수사주도권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수시로 사법경찰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수사를 제외하고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개입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상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직접 명령을 하기보다는 조연·지시·지침 등을 내리며, 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취하고, 일반적인 사법경찰의 업무를 감독하며, 혐의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도 사건을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정도이다. 또한 기금 사법경찰의 인권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법적 억제로서 이를 지휘·통제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지하여 경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은 수사판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실제로는 중요한 사건에 관여 행사되고 지휘할 수 있는 경찰관은 수사부서 경찰관에 엄격히 한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1871년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를 모범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 될 때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중앙의 가장 강력한 내무성 경찰국에 의해 관리·운영되었다. 이 유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민주화개혁의 일환으로 1947년의 경찰법 개정과 1948년 3월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정·촌(우리나라의 시·읍·면) 단위에 도입하고, 동년 7월 형사소송법도 미국식으로 개혁하여 경찰에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시·정·촌 단위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자치경찰간의 공조불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1964년 6월 8일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을 분권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조직이 이후 오늘날에는 자치경찰의 토대 위에 통합되어 있다.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구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경찰의 특징이다. 일본은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공안위원회제도를 편 경찰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한편 민주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1952년 4월 28일의 대일평화조약과 1964년 6월 8일의 경찰법 개정으로 법률상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띠고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소관하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공안위원회의 독자적 성격에 비추어 내각과의 긴밀한 연락 및 정책 결정에 참여를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신경찰법은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그 운영상 관료화와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중전의 이원 조직을 지방자치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자치경찰로 통일하였다.

국가경찰 행정기구로서는 내각총리대신의 관리하에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는 국무대신급이며 위원 5명)가 설치되고,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독립적 성격을 띤 집행기관이며, 총리부 또는 공안위원회의 의령도 아니며 단순한 공안위원회의 사무국도 아니다. 공안위원회가 경찰행정에 관한 정책 결정기구라고 하면 경찰청은 그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 장관은 경찰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의 경찰을 지도 감독하며, 또한 도·도·부·현 경찰 상호간의 연결조정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경찰대학교·과학경찰연구소·황궁경찰본부 등이 있으며, 경찰청의 지방기 관으로 7개의 관구경찰국을 설치



노 영 민
포천경찰서장

하여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관구경찰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현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의 특색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관구경찰국 제이다. 관구경찰국의 설치 ① 소요사태나 위해 등의 종합지휘, ② 부·현 구역을 초월한 범죄의 관여화에 대비, ③ 전국적인 경찰 통신시설의 확보, ④ 부·현 경찰행정의 국가적 내지 전국적인 조정 등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중전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조직이 자치경찰로 통합된 것이다. 도·도·부·현의 경찰에는 경찰본부(동경도는 경시청) 이외에 경찰서(하부기관으로 파출소·주재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 경찰본부에는 경찰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동경도에는 경시중장, 도·도·부·현 경찰에는 각각의 경찰본부장이 있어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북해도와 같이 지역이 넓은 곳은 도공안위원회 및 도경찰본부 이외에 방면공안위원회 및 방면경찰본부가 따로 있다. 또한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등 대도시에는 도부현경찰본부 밑에 시청경찰부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그 기원을 프랑스법에서 찾는다. 검찰관제도도 일본 법제에 도입된 것은 1872년의 사법조직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검찰관은 법원과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을 감찰하고 악을 제거하며, 재판의 당부를 감시하는 직으로 규정하고 검찰관의 지휘하에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체제를 두었다. 이때의 조직원리는 대체적으로 1874년의 사법경찰규칙, 1880년의 치죄법, 1890년의 형사소송법을 거쳐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었다.

그러나 패전후 미군정령 당시인 1946년 3월에 연합군총사령부측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영미의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면서 사법경찰관리를 검찰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 하였다. 이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완전한 자치체로 운영하였으나, 1953년 법을 개정하여 수사권을 현제와 같은 이원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국민연금 포천사무소 개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으로 제도시행 18년째를 맞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 1,690만명, 연금수령자 150만명, 기금 150조원이 적립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는 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바 가입자들의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천사무소를 2005. 9. 6자로 부득이 폐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2005. 9. 12자로 포천사무소(포천시 신읍동 72-7 문암빌딩 2층-포천시청옆)가 개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업무서비스로 신뢰받는 국민연금 의정부지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